



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지방소득세(법인세분) 부과취소

지방세기본법 제58조 【부과취소 및 변경】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부과취소 하고자 합니다.

- 1. 납 세 자 : *****
- 2. 부과취소사유 : 국세경정(결손금 소급공제)
- 3. 건수 및 세액

(단위 : 원)

취소건수	당 초	취 소	차 액
1	15,924,900	15,924,900	0

- 붙임 1. 지방소득세(법인세분) 부과취소(경정)결정서 1부.
 2. 지방소득세(법인세분) 부과취소내역서 1부.
 3. 국세청 통보자료 1부. 끝.

주무관 **박미연** 지방소득세1팀 **이덕배** 세입관리팀장 **이정현** 기획경제국장 **김용운** 전결 05/31

협조자

시행 세무2과-19518 () 접수 ()
 우 0609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/ www.gangnam.go.kr
 전화 02-3423-5715 /전송 02-3423-8834 / ppetti78@gangnam.go.kr / 부분공개(6)